사회체육학과학생회 회칙

[2013.03.04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체육학과학생회		
제3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제4장 선거		
제5장 재정		
제6장 회칙재정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회원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과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각 부서별 부장 및 차장, 회원으로 구성되는 독립 기구이다.

제7조(의결)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회,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순서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상정이 허용된다.

제8조(특별기구)

- ① 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 기구는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9조(학교 및 학과당국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 및 학과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및 학과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부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및 학과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체육학과학생회

제1절 사회체육학과학생회

제10조(지위) 사회체육학과학생회는 본 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1조(구성) 사회체육학과학생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부서 부,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 ①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②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
- ③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 및 예,결산 심의 및 승인권
- ④집행부 각 부장의 일괄 인준권 및 해임 의결권
- ⑤사회체육학과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 및 탄핵 소추권

제13조(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 ①정기총회는 학기별 2회 소집한다.
- ②임시총회는 본 회의 회장, 사회체육학과 회원1/5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1주일 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 ③학생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소집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4조(의결)

- ①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의 1/5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②의결 정족수는 전체 회원의 1/3이상의 참석에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회체육학과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은 재적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의결에 대한 결정은 참석 회원의 의견으로 결정되며 미 참석 회원에 대해선 발언권을 제한한다.

제15조(상조회) 사회체육학과학생회는 상조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다음에 준하여 활동한다.

- ①상조회는 학생회비의 일정 금액을 경조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지급 대상은 회원의 결혼 및 2촌 이내의 친족사망, 회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으로 한정한다.

제2절 부서

제16조(부서) 부서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17조(구성)

- ① 부서는 각 부장과 차장으로 이루어진다.
- ②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각 부서별 부장 및 차장은 필요에 따라 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 ① 부서는 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 ② 부서별 부,차장 및 부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절 학생대표자모임

제19조(지위) 학생대표자모임은 본 회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제20조(구성)

- ①학생대표자모임은 학년별 대표 1인씩 총 4인으로 이루어진다.
- ②학년별 대표 중 4학년 대표가 전체 학생대표자모임의 대표가 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 ①학생대표자모임은 사회체육학과학생회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 ②학생대표자모임은 매년 2학기 종강 정기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제3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제22조(학생회장)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④ 과의 의결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⑤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3조(학생부회장)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5조(선출)

- ① 학생회장 선출은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며 재학중인 자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6조(지위)

- ①사회체육학과 학생회장은 사회체육학과 회원들을 대표하여 학생회 의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
- ②사회체육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 또는 사회체육학과 회원들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직위가 해제되지 않는다.
- ③사회체육학과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직위가 해제되지 않는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 ①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②집행부의 각 부,차장의 임명권 및 해임권과 부장의 부원 임명동의 요구에 대한 동의권, 거부권을 갖는다.
- ③학생회 및 총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 ④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책임을 진다.

제28조(선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9조(학생부회장의 선출) 학생부회장의 선출 권한은 임명된 학생회장에게만 있다.

제4장 선거

제30조(선거시기)

- ① 학생회 학생회장 선거는 전년도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학생회에서 정한다.
- ②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익월 중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 ②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학생회가 지명/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 ④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제32조(선거방법)

-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 ② 학생회는 학생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늦어도 추천 시작일 15일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 ③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④ 선거운동기간은 15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로 한다. 단, 한 명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과 반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⑥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 ⑧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3조(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의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4조(선거시행세칙)

-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관위,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선거시행세칙은 학생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 ④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5장 재정

제35조(재원)

-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및 수익사업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의 액수는 3월초 학생회가 결정한다.
- ③ 본회의 목적 안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보조금과 수익사업 수입은 학생회비에 귀속된다.
- ⑤ 회비는 1학기 초 징수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는 매 학년 단위로 하며 학년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경비의 관리)

- ①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 ②경비의 수입과 지출 회계에 관한 업무는 예산 부장이 관리하며 자료를 통해 증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생회는 당해 연도 전체예산안의 10%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활동경비 및 평가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안) 학생회 당해연도 예산안은 연간사업계획을 포함하여 1학기 정기총회 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예산안은 학생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제39조(결산보고)

- ① 학생회는 2학기 종강 정기총회 시 당해연도 결산보고를 공고해야 한다.
- ② 결산보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40조(발의)

- ① 회칙개정안은 과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학생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41조(의결) 회원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공포)

-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